

# 제1장 총칙

## 1.1. 통칙

### 1.1.1. 목적

본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“로스쿨”이라 한다)의 실무 교육에 일조하고 우수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, 로스쿨 학생의 법률이론·변론실무 및 법적 논증 등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대법원 주최 변론 경연대회에 적용할 사항을 마련함에 있다.

### 1.1.2. 대회 명칭

본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경연대회의 명칭은 "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(Korea Moot Court Competition)"로 한다.

### 1.1.3. 대회의 주최·주관

- 1) 대회는 대법원이 주최하고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며 대회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.
- 2) 대회장은 대회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3) 집행위원회는 대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(주무위원 1인 포함) 및 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.
- 4)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.

### 1.1.4. 대회의 구성

대회는 서면심사, 본선 및 결선으로 구성된다.

### 1.1.5. 대회 개최 횟수

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
### 1.1.6. 대회 규정의 적용 및 해석

- 1) 대회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,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거나 대회의 성질에 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에 따라 대회장이 결정한다.
- 2) 대회장은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에 대회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## 1.2. 경연

### 1.2.1. 경연 분야

경연은 민사, 형사 등 재판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### 1.2.2. 경연 방식

경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.

1. 예선: 출제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 준비서면, 변론요지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본선 경연 팀을 결정한다.

#### 2. 본선

1) 출제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 민사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각 서면을 모두 제출하고, 형사의 경우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각 서면(검찰 측의 의견서, 피고인 측의 변론요지서)을 모두 제출한다.

2) 집행위원회는 대진표에 따라 경연 팀의 지위를 부여하고(원고·피고 또는 검찰 측·피고인 측), 그 팀의 지위에 해당하는 제출된 서면을 상대방 측 경연 팀에 송부한다.

3) 경연 팀은 부여된 지위에 따라 화상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한다.

4) 경연 팀은 제출된 서면과 화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본선 변론을 실시하고, 집행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따라 결선 경연 팀을 결정한다.

#### 3. 결선

1) 결선문제는 본선문제와 동일하다. 다만 결선 경연 전(1시간 이내)에 본선에 출제된 문제에 일부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하는 등 심화된 내용을 부가할 수 있다.

2) 경연 팀은 변론 준비를 거친 후(1시간 이내) 화상자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 토론 형식으로 구두변론을 실시하며 집행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한다.

### 1.2.3. 경연 문제

1) 문제는 법률적 쟁점에 관한 법률가로서의 논증 능력 함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출제하되, 재판기록의 형태를 띠는 '기록형' 또는 사건 개요 설명의 형태를 띠는 '사례형'으로 제시된다.

- 2) 문제는 예선에서 민사·형사 각 1문제, 본선 및 결선에서 민사·형사 각 1문제를 출제하되, 결선에서는 본선에 출제된 민사·형사 각 문제에 일부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할 수 있다.
- 3) 문제는 예선 및 본선의 경우 경연 팀 양측에 동일하게 제시된다.

## 1.3. 참가자

### 1.3.1. 참가자격 및 팀(team)의 구성

- 1) 대회에는 동일한 로스쿨 재학생(휴학생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. 참가횟수는 제한이 없다.
- 2) 팀 구성원은 신청일부터 결선종료일까지 변경할 수 없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.
- 3) 팀이 구성 요건을 결여하였음이 발견되거나 결여하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팀의 대회 출전 자격은 상실된다.

### 1.3.2. 참가자의 공정성

1.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경연에서 요구되는 법적·사실적 논증을 스스로 조사·연구하고, 변론하여야 하며,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재학 로스쿨의 교수 등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  - 1) 자료조사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
  - 2) 서면작성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
  - 3) 구술변론기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
2. 참가자는 대회기간 중 경연 심사를 위한 재판부에 재학 로스쿨, 인적사항 및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참가자는 신의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경연에 참가하여야 한다.

## 1.4. 재판부

### 1.4.1. 재판부의 구성

1) 재판부는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한다.

2) 심사관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.

#### **1.4.2. 재판부의 독립성**

재판부는 본 대회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독립하여 변론 경연을 진행하고 평가한다.

#### **1.4.3. 재판부의 공정성**

심사 대상이 되는 경연의 참가자와 사이에 배우자·친족의 관계에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법관은 심사관이 될 수 없다.